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 계415-	(전화번호)	전결규정 조항 전결사항
처리기간		시 장	
시행일자	76. 3.	3/9	결재 1976. 3. 20
보존년한			

보조기관	제2부 시장	3/9	협조	법무 담당관(고시안 심사)
	도시정비국장			
	도시계획과장	가로계획계장		종합계획계장
기안책임자	정광훈	76,3,8		

경유 수신 참조	각 안 참 조	발신		통제	

제 목 도시계획 시설(하천) 결정및 지적승인

고시제 50 호

제1안 내부 결재

1. 당시관내 불광천, 대방천, 봉원천은 서울시 고시 제952호 (66,4,13)로 하천 고시 되었으나 도시계획 시설 로서는 결정된바 없던중 금번 일부 구간 변경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건설부 고시 제 123호 (73,4,4)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시설결정및 일부구간 지적승인 고시 코저 합니다. 끝.

고시안심사	1976.3.15	제 53 호
사		법무담당관
	전결	공지

제 2안 고 시 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서울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및 지적승인

1. 당시 도시계획 시설(하천)을 다음과 같이 시설결정~~및 일부 구간~~ 하천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건설부고시제 123호(73,4,4)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관인

발송

0201-1-8A (갑)
1976 11. 10 승인

103

190㎜ × 268㎜ 전화용지 (2종) 60g/㎡)
시 립 소 년 기 술 원(92-0436)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 3. .

서 울 특 별 시 장

가. 하천 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연 장	기 점	종 점	비고
신설	불광천	8,790M	불광동 424	한강합류점	
신설	봉원천	1,250	당인리철교교량	"	
신설	대방천	7,400	상도동 34	신길동 도림천합류지점	

나. 하천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연 장	기 점	종 점	비고
신설	불광천	1,456M	종동 86-5	성산동 341-5	
신설	봉원천	308	서강교	봉원교 강변도로교량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끝.

제3안

수신 건설부장관 발신 시 장

제목 동건

1. 당시관내 도시계획 시설(하천)을 도시계획법 제12조및 제13조와 건설부 고시 제123호(73,4,4)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별첨 고시문 사본및 도면과 같이 고시 하였기 사유서 첨부 보고합니다.

첨부 1. 고시문 사본및 도면

2. 사유서

제4안

수신 공보실장 발신 과 장

제목 시보 게재 의뢰 . . . . . .

시장 : 다음과 같이 시보게재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보게재 구분 : 고시

나. 시보게재건명 : 도시계획시설(하천)결정및 지적승인 고시

다. 법규근거 :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첨부 고시문 사본 1매.끝.

제 5안

수신 수신처참조 발신 시 장

제목 통 건

1. 귀구관내 도시계획 사항이 별첨 고시문 사본및 도면과 같이 시설결정및 지적승인 고시되었기 통보하니 관계도면 정리후 도시계획 업무 취급에 착오 없도록 하고 관계과에 통보할것.

첨부 고시문 사본및 관계도면 각 1부.끝.

수신처 : 마포구,영등포구,서대문구,은평출장소

제6안

수신 치수과장 발신 과장

제목 통 건

1. 치수 410-141 (76, 2, 23) 의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요청하신 하천이 별첨과 같이 고시 되었기에 통보 합니다.

첨부 고시문 사본 및 관계도면 각1부.끝.

0201-1-43A (2-2) 서 울 특 별 시 190㎜×268㎜인쇄용지(2급)60g/㎡
1972. 12. 29 승 인 소 년 기 술 원 (92-0436)

사 유 서

(1) 위 하천은 하천법 제10조에 의거 준용 하천으로서 서울시 고시 제952호 (66, 4, 13)로 하천 고시 되었으나 도시계획 시설로서는 결정 된바 없던중

(2) 금번 불광천 및 대방천에 대하여 일부 불규칙한 유로 구간을 최 단거리로 위치 변경 하여 시행코저 하는 것이며,

(3) 봉원천은 기존유로 대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여 폐천부지를 양여 받고저 하는 것임.